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664
----------	-------

발의연월일 : 2026. 8. 20.

발 의 자 : 장종태 · 박정현 · 소병훈
정준호 · 황명선 · 복기왕
김남준 · 박지혜 · 황운하
안태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여 주택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되고 있음.

그러나 회계연도 중의 기금 운용현황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절차가 없어 집행 부진이나 재무구조의 변동을 결산 이전에는 확인하기 어렵고, 기금의 수지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융자사업 지원 방식의 변경도 국회에 대한 사전 설명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반기별로 여유자금의 규모와 수익률, 다른 기금·회계에 대한 예탁·회수 현황, 주요항목별 지출 집행실적과 집행률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집행률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거나 미달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개선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며, 융자사업의 지원 방식을 변경하거나 지원 방식별 비중

을 현저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운용에 대한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기금 운용현황 등의 국회 보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운용현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반기 종료 후 6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여유자금의 규모, 운용방법별 운용액 및 수익률
2. 다른 기금·회계에 대한 예탁·회수 현황
3. 기금운용계획상 주요항목별 지출 집행실적 및 계획액 대비 집행률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현황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집행률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거나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개선대책을 제1항에 따른 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융자사업의 지원 방식(융자 대상 자금을 금융기관의 재원으로 조달하고 기금이 그 이자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지원 방식별 지원 비중을 현

저하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의 방법·서식 및 절차, 집행률의 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 운용현황 등의 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반기분의 보고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0조의2(기금 운용현황 등의 국회 보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의 운용현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반기 종료 후 6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u>1. 여유자금의 규모, 운용방법 별 운용액 및 수익률</u> <u>2. 다른 기금·회계에 대한 예탁·회수 현황</u> <u>3. 기금운용계획상 주요항목별 지출 집행실적 및 계획액 대비 집행률</u> <u>4. 그 밖에 기금의 운용현황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u> <u>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집행률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거나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개선대책을 제1항에 따른 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u>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용자사업의 지원 방식(용자 대상 자금을 금융기관의 재원으로 조달하고 기금이 그 이자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지원 방식별 지원 비중을 현저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의 방법·서식 및 절차, 집행률의 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